제407회 임시회 '23. 3. 16.(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김정일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O 발의일자 : 2023년 3월 3일

O 회부일자 : 2023년 3월 6일

3. 제안사유

○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청소년단체들이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전한 청소 년을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O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O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및 운영 근거 규정(안 제3조)
- O 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등 규정(안 제4조)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대진)

가. 제출배경

- 도내에서는 22개¹⁾의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 활동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단체 활동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청소년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협의회는 부재함.
- 「청소년 기본법」 제41조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수불가결함.

<근거:청소년 기본법>

제41조(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① 특정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이에,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협의회 활동을 지원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 10개 시·도에서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운영 근거 마련
 - 근거 부재(2) : 충북, 강원

¹⁾ 출처: 충청북도 홈페이지 청소년단체 현황(2023.3.6.기준), 붙임 참조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청소년 기 본법」 제41조²⁾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안 제2조는 상위 관련 법령인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용어 정의상 문제가 없음.
- O 안 제3조는 사전에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단체협의회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설립할 수 있다는 협의회 설립 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비영리·공익적 목적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안 제3조의 협의회 설립 근거와 운영에 관한 규정은 타당함.
- 안 제4조는 협의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청소년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국내외 청소년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청소년문제와 활동에 대한 조사·연구, 우수회원단체와 모범청 소년지도자 및 청소년포상,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권익증진 및 교류사업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청소년 육성을 위한 비 영리·공익적 목적의 사업으로 협의회 설립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한 다고 판단됨.

²⁾ 제41조(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① 특정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또한,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이는 「청소년 기본법」 제41조제2 항을 준용한 것으로 타당함.
- 안 제5조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 및 지원체제 확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 기본법」 제40조제1항 제9호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활동 중 하나로 지방청소년단체협의 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또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 및 지원체제 확립을 통해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충청북도 청소년단체 협의회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 의회의 공익적 성격과 역할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게 제정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의 설립으로 도내 청소년단체들의 구 심적 역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 충청북도 청소년 단체 현황

연번	단체명	비고
1	한국환경사랑청소년육성연맹	법인
2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	
3	글로벌비전청소년연합회	
4	(사)유스투게더	
5	(사)제천푸른청소년문화센터	
6	(사)중원청소년문화복지센터	
7	(사)두드림 교육공동체	
8	(사)청소년이미래다	
9	육영아카데미	
10	단촌청소년활동개발원	
11	한국스카우트충북연맹	단체
12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충북지부	
13	한국해양소년단 충북연맹	
14	청소년폭력예방단 충북지부	
15	한국걸스카우트충북연맹	
16	한국청소년충북연맹	
17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18	청주국제교류회	
19	참사랑상담원	
20	(사)충북기독교청소년협회	
21	청소년이 행복해지는 문화공동체 그루터기	
22	대한청소년보호순찰대	

*출처 : 충청북도 홈페이지(2023.3.6.현재)